

문서번호	BSKS-1-1-18
제정일자	2004.1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1/8

2004.12.01.제정 2012.02.01.개정 2012.08.17.개정 2012.11.30.개정 2016.03.01.개정 2017.09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19.10.01.개정 2020.03.03.개정 2020.09.24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02.24.개정 2021.10.21.개정 2022.02.28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07.29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34조(학점인정) 및 제25조(편입학생), 제26조(재입학생), 제27조(전과생),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등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입학생의 인정학점) ①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20학점 이 내(1학년 2학기 편입(최대 20학점), 2학년 1학기 편입(최대 40학점), 2학년 2학기 편입(최대 60학점), 3학년 1학기 편입(최대 75학점)에서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총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유아교육과 편입학생 중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소지자는 편입학과의 심사를 거쳐 교직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<개정 2012.11.30., 2019.10.01.>

②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공과목 이수학점 기준을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07.16., 2019.10.01.>

학년	학점	
1학년 2학기	30학점	
2학년 1학기	15학점	
2학년 2학기	10학점	
3학년 1학기	10학점	

- ③ 편입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본 대학 졸업규정에 따른다.
- ④ 유사전공이 아닌 학과에 편입하여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점이 부족할 시는 계절학기 개설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.<개정 2012.11.30.>



문서번호	BSKS-1-1-18
제정일자	2004.1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2/8

- 제3조(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의 학점인정)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(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포함)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, 교직 교양과목 등 학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22.02.28.>
 - 1.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, 교직, 교양과목 등 중 본교 전공, 교직, 교양과목 등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22.02.28.>
 - 2.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본교 교양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학점을 교양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3. 위 1, 2호의 학점인정은 해당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이후 학과장의 요청으로 교무 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12.11.30., 2022.02.28.>
- **제4조(재입학생의 학점인정)** ① 재입학생의 제적 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.
 - ② 삭제 <2012.11.30.>
- 제5조(전과생의 학점인정) ① 폐과로 인하여 전과한 학생의 성적은 전적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이수구분 변동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.
 - ② 폐과로 인하여 전과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공과목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③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과한 학생의 성적은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유사과목을 심사하여 이수구분별로 구분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
 - ④ 전항의 학점 인정은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.
- **제5조의 2(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선수과목 학점인정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 중 선수 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.
 - 1.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과정 학점으로만 인정한다.
 - 2. 선수과목 학점인정의 처리방법은 PASS/NONPASS로 한다.
 - 3.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장학금과 관련한 성적 산출 시 적용되지 않는다.
 - <조 신설 2012.08.17.>
- 제5조의 3(산업체 위탁생 인정과목 학점인정) ① 산업체 위탁생은 수강 신청한 인정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"별지 제1호 서식"을 작성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담당교수는 제1항의 전공관련업무평가서에 의거 평가 및 성적입력을 한 후 전공관련업무평가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<조 신설 2012.11.30.>
- **제5조의 4(타학과 과목 이수 학점인정)** 유사계열 내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학생이 소속된 소속 학과장이 지정한 교과목을 학생이 이수한 경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<신설



학적인정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18
제정일자	2004.1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3/8

2017.09.01.>

- 제5조의 5(대학 진로탐색 학점인정) ① 교내 진로교육체계 형성을 유도하고, 자율적·창의적인 진로탐색 기회 마련 및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 활동 및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 - ② 진로탐색학점제는 대학의 취업, 진로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에서 운영·관리한다.
 - ③ 대학 진로탐색 학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운영·관리 행정부처에서는 진로교육 및 인재 양성 관련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<조 신설 2020.03.03.>

- **제6조(학점교류에 의해 취득한 성적인정)** ① 국내외 협력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"별지 제2호 서식"을 작성한 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2.11.30.>

제7조(대상) 학점인정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1. 협약학과와 관련하여 본교 입학 전 대학과목 선이수 과목을 취득한 자
- 2. 본교가 주관하여 대학 입학 전 산업체 재직자들에게 소정의 주문식교육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선이수 교육과목을 취득한 자
- 3. 산업체 위탁생 및 산업체 근무 중인 재학생의 경우, 수강 신청한 과목과 산업체의 업 무내용이 유사한 재직자
- 4. 자격증 소지자(자격증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참조)
- 5. 현지 학기제 이수자
- 6. 해외 인턴십 이수자
- 7. 국내 인턴십/실습학기제 이수자
- 8. 편입학(일반/폐교)자
- 9. 전과한 자
- 10. 사회봉사 활동한 자(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참조)
- 11. 현장실습한 자
- 12. 학교기업 현장실습자
- 13. 삭제<2016.03.01.>
- 14. 교양외국어 프로그램 이수자 <개정 2016.03.01.>
- 15. 교양 및 실기특강 수강자(교양특강 및 실기특강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참조)
- 16. 군복무중 학점을 취득한 자(군휴학자 학점취득에 관한 규정 참조)
- 17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 중 선수과목을 취득한 자<호신설 2012.08.17.>
- 18. 외부사업, 주문식교육 등 교육·취업역량향상을 위한 사업에 참가한 자 <호선설 2016.03.01.>



문서번호	BSKS-1-1-18
제정일자	2004.1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4/8

- 19. K-MOOC 등 외부 협력기관의 온라인 교과목 이수자(외부 온라인 교과목은 수강신 청 규정의 온라인강좌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) <호신설 2020.03.03.>
- 제8조(일반워칙)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 - ② 학점인정 시기는 이 규정 제9조에 따른다.
 - ③ 학점인정 시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 - ④ 이 규정 제9조에 의거 부여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 - ⑤ 기타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9조(학점인정 및 학점부여 시기) 학점인정 적용시기 및 범위와 재학중 인정 가능한 누적 최대 학점은 '별표1"에 준한다.
- 제10조(학점확인 및 정정) 학생은 학기말 선이수로 받은 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학점이 틀린 경우는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선이수 학점취소) 선이수로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이 성적이 저조하여 재수강을 하고 자 할 때는 성적포기규정에 따라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제2조(편입학생의 인정학점)은 201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BSKS-1-1-18
제정일자	2004.1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5/8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	BSKS-1-1-18
	제정일자	2004.12.01.
	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	페이지 수	6/8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 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8
제정일자	2004.1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페이지 수	7/8

[별표1] 학점인정 범위, 적용시기<표 개정 2016.03.01., 2020.09.24., 2021.02.24., 2022.02.28., 2022.07.29.>

그ㅂ 7		학점인정범위	참 저 ㅂ 서 바 벼	조비 기 크	비고
	구분	, , , ,	학점부여방법	증빙서류	,
선 이	협약학과	매학기 24학점 이하		교육과정표 참조	장학금적용
수 	산업체 주문식교육	매학기 12학점 이하		교육과정표 참조	장학금적용
산업체위탁생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		매학기 9학점 이하		전공관련업무평가서	장학금적용
		학기종료시 24학점 이하	과목별 실점수	성적표	
		학기종료시 20학점 이하		성적표	장학금적용
<u> </u>	구내인턴십	학기종료시 20학점 이하		성적환산표	장학금적용
전·	학기제 공현장실습	수강신청 학점범위 내		성적환산표	장학금적용
현장실습	단기	학기당 2학점 이하	PASS 처리	현장실습일지 등	장학금적용
실 습	계절제	학기당 3학점 이하	PASS or 실점수	현장실습일지 등	
	학교기업 현장실습	학기당 6학점 이하 전학년 15학점 이하	해당과목 실점수	현장실습일지 등	장학금 적용
자	-격증 취득	전학년 6학점 이하	PASS 처리	관련자격증	
편입학 (일반/폐교)		학점인정규정에 따름	PASS 처리	전 대학 성적표	
전과한 자		학점인정규정에 따름	전공과목 실점수	전공과목인정서	
사회봉사활동		전학년 2학점 이하	PASS 처리	사회봉사활동인증서	
<u> </u>	고양외국어	전학년 2학점 이하	PASS 처리	이수확인서 (주관 부서 공문)	
	: 및 실기특강 수강자	전학년 4학점 이하	11100 / 19	교양특강보고서	
군!	복무중 학점 취득자	학기당 6학점 이하 전학년 12학점 이하	실점수	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	장학금적용
선수	과목 취득자	학기당 9학점 이하	PASS 처리	평가기록표(성적표)	
주년 교육·취	외부사업, 문식교육 등 취업역량향상을 사업 참가자	학기당 4학점 이하	PASS 처리	학점 인정 요청서	
K-MOOC 이수자		학기당 3학점 이하 (전학년 12학점 이하)	PASS 처리	K-MOOC 이수증	
외부협 이바	력기관(화신사 대학교 등) 온라인	학기당 3학점 이하	PASS 처리	발급 이수증 등	
교양	독서학점인정	전학년 4학점 이하	PASS 처리	학점 인정 요청서	
대학 및 전문대학 (수료)졸업자		학기당 3학점 이하	PASS or 과목별 실점수 (전적대학)	학점인정요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	



	문서번호	BSKS-1-1-18
	제정일자	2004.12.01.
Ī	최종개정일자	2022.07.29.
	페이지 수	8/8

[별지 제1호 서식]

전공관련업무평가서

구	학과(계열)			
	학 번		이 름	
보	과 목 명			
ਰੁਧ				
무				
내				
용				
과				
제				
뫄				
평				
가				
란				
	학점	(성적)		

담 당 교 수 확인란: **①**

학과(계열)장 확인란 : ①